

(가칭)중구 학산동 66-1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

의안 번호	2571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3. 24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(가칭) 중구 학산동 66-1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명 : (가칭)중구 학산동 66-1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
- 나. 위치/면적 : 학산동 66-16번지 일원 / 10,533m²
- 다. 견폐율/용적률 : 68.67%/887.26%
- 라. 세대수 : 공동주택 465세대(임대 24세대 포함), 오피스텔 90호
- 마. 주요내용 :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

3. 근거법규

- 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
- 나. 「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7조제1항

4. 참고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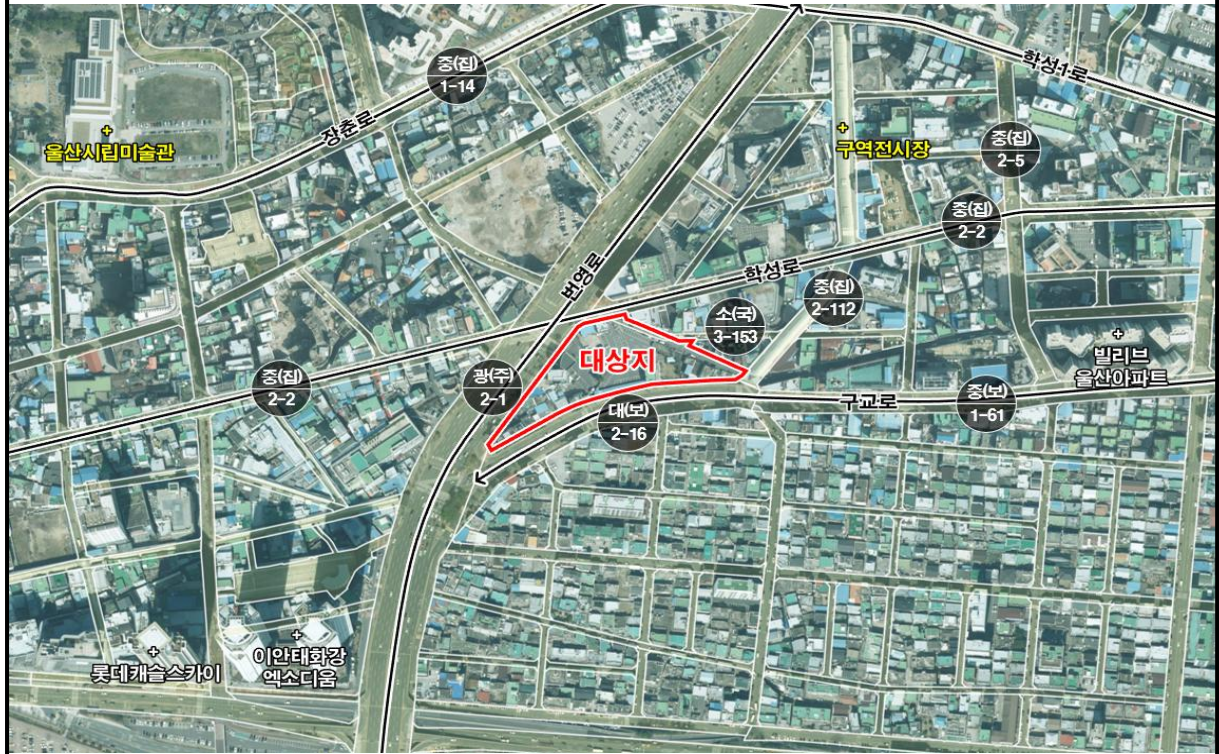
- 가.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 청취
- 나.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,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

5. 붙임

- 가. (가칭)중구 학산동 66-1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위치도 및 정비계획 결정안
- 나. 근거법규
- 다. (가칭)중구 학산동 66-1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(별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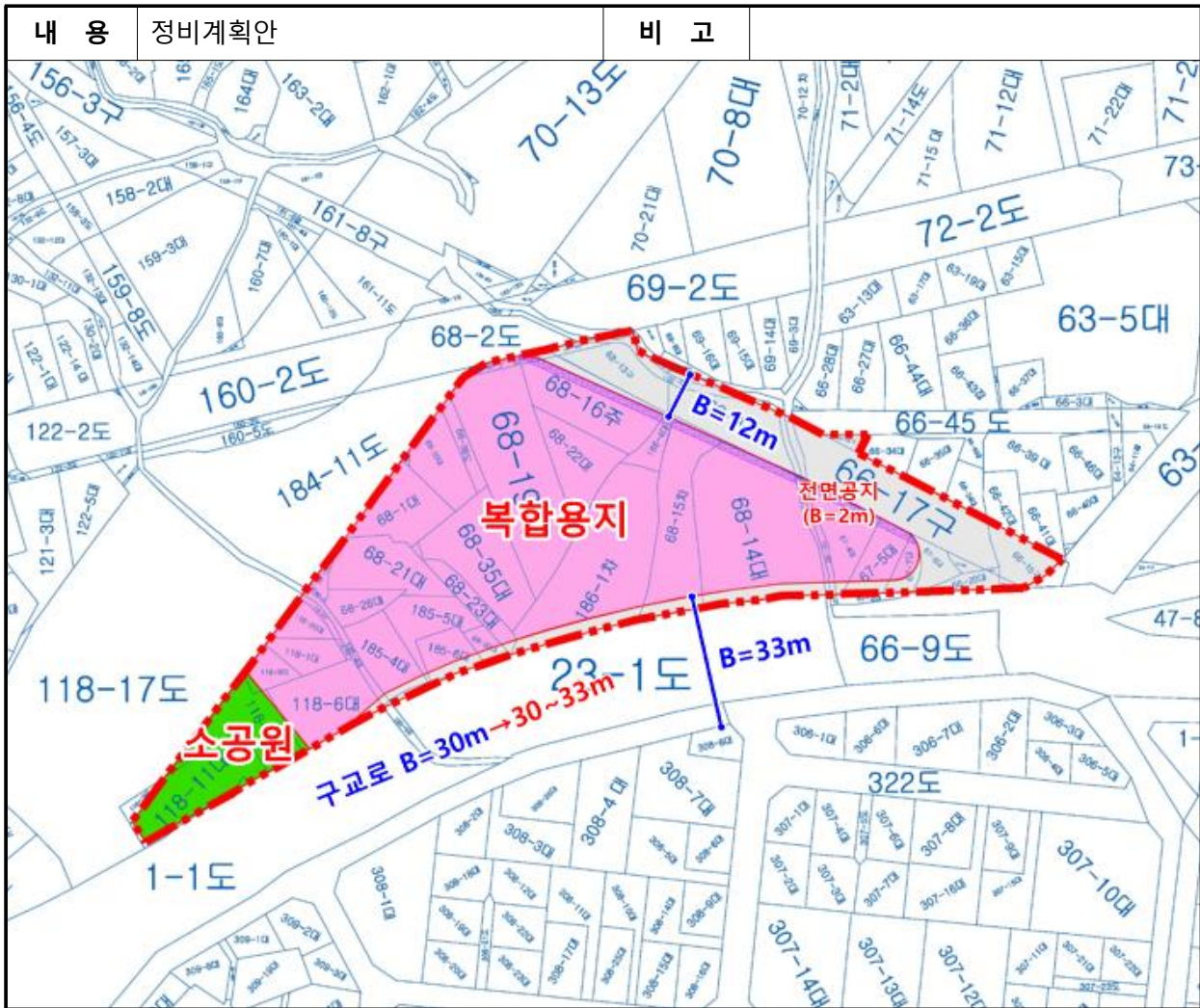
붙임 가 (가칭)중구 학산동 66-1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
 위치도 및 정비계획 결정안

사업명	(가칭)중구 학산동 66-1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	위 치	학산동 66-16번지 일원
내 용	위치도	비 고	



내 용	사업계획(안)
------------	---------

구 분		내 용	비 고
사업규모	정비사업면적	10,533.0㎡	
	공동주택 및 오피스텔	3개동, 지하4층 ~ 지상 47층	
	주민공동시설	주민운동시설, 어린이놀이터 등	
건축면적		5,133.27㎡	
연면적		99,829.17㎡	
주차대수		744대	
세대수		- 공동주택 465세대(임대 24세대 포함) - 오피스텔 90호	



구 분	면 적(m ²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10,533.0	100.0	
복합용지	7,475.0	71.0	
복합용지	7,475.0	71.0	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
정비기반시설용지	3,058.0	29.0	
도 로	2,328.0	22.1	
공 원	730.0	6.9	소공원

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제15조(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)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□ 「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

제7조(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류) ① 구청장등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(변경)신청서
2. 정비구역의 지정(변경)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
 - 가.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공람·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
 - 나. 별지 제3호서식의 구·군의회 의견청취내용
 - 다.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조서
 - 라. 별지 제5호서식의 기초조사결과 정리내역서